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3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81”을 “48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3”을 “475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49”를 “45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81</u>	<u>48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73</u>	<u>475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49</u>	<u>451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